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1월 2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권**	권** 1972-10-06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길	무단전출
엄**	엄** 1963-04-08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89-07-21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5번안길	무단전출
이**	이** 1974-04-10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45번길	무단전출
이**	전** 1979-04-22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45번길	무단전출
이**	이** 2011-06-30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45번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지 은영 문의전화 : 032-560-4617)

2016년 01월 15일

검단4동장

